부전공시행세칙

제정 2007. 3. 1 개정 2011. 3.21 개정 2011.11. 1

- 제1조(목적) 이 시행세칙은 을지대학교(이하 "본교"라 한다) 학칙 제37조에서 정한 부전 공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수강범위) 부전공 이수를 원하는 자는 본교의 모든 대학 전학과(의예과, 의학과, 보건의료계열, 사범계 관련 학과 제외)에서 부전공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.
- 제3조(신청자격) ①제1학년 성적 평균평점이 3.0 이상인 자로서 부전공을 희망하는 자는 1학년 2학기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학기부터 부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.
 - ②신청인원은 부전공학과의 수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부전공자의 인원수를 학과별로 제한할 수 있다. (신설 2011.3.21)
- 제4조(이수학점) ①부전공을 이수하는 자는 부전공으로 지정된 전공교과목 중에서 21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.
 - ②부전공 교과목을 학과(부)에 따라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.
 - ③복수전공을 이수중인 자가 부전공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미 이수한 복수전 공과목을 부전공 이수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. 단, 이 경우 복수전공 자격은 소멸된다. (신설 2011.11.1)
- **제5조**(수강지도) ①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부전공지원서를 주전공 학과(부)장에 게 제출하고 수강에 따른 지도를 받아야 한다.
 - ②주 전공 학과장은 부전공 수강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부전공 학과장에게 통보하여 수강지도를 받게 하며, 부전공 학과장은 학업계획서를 교무처에 제출한다. (개정 2011.3.21)
 - ③부전공 교과목이 주 전공 교과목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. 다만, 교직과목은 교육학과 관련된 학과의 부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.
 - ④실험실습을 필요로 하는 교과목을 부전공과목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정해진 실험 실습비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.
 - ⑤부전공 중도 포기자, 이수학점 미달자의 기취득 학점은 일반선택과목 학점으로 인정하여 졸업학점에 가산한다.
- **제6조**(학위수여) ①부전공의 졸업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주 전공 학사학위와 부전공 학사학위를 같이 수여한다. (개정 2011.3.21)
 - ②부전공을 중도탈락하거나 포기하는 자는 주 전공 학사학위만을 수여한다. (개정 2011. 3.21)

부 칙

이 시행세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시행세칙은 2011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시행세칙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